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률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3법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로써 정부는 '99년 1월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한 이후 2년여만에 입법화하게 되었다.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3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한전 구조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며 앞으로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전력시장 운영을 위한 전력시장 운영규칙, 전기사업허가처리지침 등 필요한 규정들을 제정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핵심이 되는 두 법안을 시리즈로 나누어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전기사업법

제4장 전력시장

제1절 전력시장의 구성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생

산한 전력을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 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5.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제32조(전력의 직접구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전력의 거래가격)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 “전력거래가격”이라 한다)은 시 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제34조(차액계약)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 사용자와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간의 차액보전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제35조(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6조(업무)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전력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정 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6.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제반규 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업무
7.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품질의 측정·기

록·보존에 관한 업무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중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보증금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지분양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선임·해임·책임 등에 관한 사항
9. 회원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1. 회계 및 경비분담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제38조(민법의 준용)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동법 제39조를 제외한다)을 준용 한다. 이 경우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회원총 회”와 “임원”은 각각 사단법인의 “사원”·“사원총 회”와 “이사 또는 감사”로 본다.

제39조(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2. 전기판매사업자
3.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5.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 중 한국 전력거래소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입
-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정보의 공개)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거래량, 전력거래가격 및 전력수요 전망 등 전력시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 전력거래의 정산·결제에 관한 사항
3.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5. 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4조(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못한다.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 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발전의 우선순위에 의하여야 한다.

-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전의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지시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업자원

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9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전력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석탄산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 장기계획 상 발전용 공급량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

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가산금
 2.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용자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1조(부담금)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9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직접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

- 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⑥ 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전기위원회

-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 ②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③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① 전기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

음 각호의 1과 같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전기공학 기타 전기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전기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었거나 전기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전기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 전기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행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 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 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8.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9.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11.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3. 산업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② 전기위원회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 등은 전기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2.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 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기사업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전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전기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당해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8조(의결정족수) 전기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9조(전문위원회) ① 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조직·기능·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전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재해 그밖의 사유로 멸실·손괴되거나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저전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61조제4항의 규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65조(정기검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의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점검 또는 통지의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점검 또는 통지의 방법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71조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⑥ 시·도지사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⑦ 전기판매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점검업무를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기술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69조(물밀선로의 보호)**
- ① 전기사업자는 물밀에 설치한 전선로(이하 “물밀선로”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밀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밀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업 면허를 받은 지역을 물밀선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물밀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물밀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0조(물밀선로보호구역안의 선로손상행위의 금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물밀선로보호구역안에서 물밀선로를 손상시키거나 선박의 닻내림·물밀에서의 광물채취·수산물의 채취 기타 물밀선로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3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그 전기설비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

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그 사용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72조(비용의 부담 등)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기타 물건간에 상호 장애를 일으키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사람이 설치한 지장물 기타 물건의 설치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지장물 기타의 물건을 설치한 자는 당해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장물 기타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및 교육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휴지중인 전기설비를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계·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⑤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는 것이 곤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를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다.
- ⑦ 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단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⑧ 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여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해임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⑨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⑩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한 자는 그를 해임하여야 한다.

제8장 한국전기안전공사

- 제74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75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 등
 - 기금에서의 출연금
 - 차입금 및 기타 수입

- 제76조(임원)** ① 안전공사의 임원은 이사장 1인, 이사 7인 이내와 감사 1인으로 한다.
- ② 이사장 및 감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는 이사장의 재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 한다.
- ③ 이사장은 안전공사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7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안전공사의 정관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목적
 - 명칭
 -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지점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안전공사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8조(사업) 안전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 전기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출판 및 배포
-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및 기술지원
- 전기안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 기타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9조(민법의 준용) 안전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8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안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제82조(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 ① 방사성폐기물을 발

생하게 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용기준 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저장·처리 또는 처분(사용후 핵연료의 처리·처분을 제외하며, 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라 한다)하는 사업(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수행한다.

1. 원자력발전사업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원자력발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비용부담 등)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라 한다)외의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용기준 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이 발생된 때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및 관리에 드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방사성폐기물의 관리대책)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 등을 포함한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한 후 원자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관리대책의 내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의 발생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관리 및 그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방사성폐기물관리 및 그 시설에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5조(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시행계획)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라 한다)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책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6조(준용) 제9조제4항·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이를 각각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로 본다.

제10장 토지 등의 사용

제87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측량 및 시공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 기타 공작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

거할 수 있다.

- ②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등이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의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일시사용
 2.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장애가 되는 식물을 방치하여 당해 전선로를 현저하게 손괴하거나 화재 기타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
- ③ 전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8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전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9조(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의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8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0조(손실보상)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일시사용, 다른 사람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또는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91조(임상회복)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일시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토지의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를 거절하거나 허가조건이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기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관리자를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이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

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장 보 칙

- 제93조(회계의 구분)**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사업자는 사업연도·계정과목분류·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고정자산회계 기타 재무계산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94조(상각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업용 고정자산을 상각하거나 적립금 또는 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종류·방법 또는 금액을 정하여 이를 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당해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여야 한다.

- 제95조(원자로 및 방사성폐기물 등에 대한 적용 제외)** 전기 설비 중 원자로와 그 관계시설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시설의 설치·유지·보수·운전 및 보안에 관한 안전규제(인가 및 허가를 포함한다)와 방사성폐기물의 종류·허용기준에 관하여는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하여서

는 아니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전사업(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허가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의 지정

- 제97조(수수료 등)**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제7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검사
 3.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③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제7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전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52조제3항 및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장 별 칙

제10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절취하거나 전기사업 용전기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손괴·절취하거나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방 사성폐기물관리를 방해한 자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조작하여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 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행업무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조작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를 방해한 자
4.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유지 또는 운행 업무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관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영위한 자
2.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

지 아니하고 원자력발전연료를 제조·공급한 자

5. 제3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력시장외에서 전력거래를 한 자
6. 제42조제1항(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7. 제8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영위한 자

제10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공급을 거절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설비를 차별하여 이용하게 한 자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
4.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밀선로를 손상하거나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5. 제8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건설·운영한 자

제10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를 공급한 자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4. 제7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5. 사외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104조(벌칙) 제73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
2. 제18조제3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4. 제7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6. 제8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건설·운영한 자
7.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제10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2.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3.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71조(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한

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73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제10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1조 내지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 또는 제73조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 또는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5.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주거용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제외한다)

- 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73조제9항 또는 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8.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제8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전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전기판매사업의 허가의 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특정전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전기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전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공급지점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5조(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로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자의 전기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종전의 제1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은 그 허가내용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7조(공급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가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급약관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수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을 종전의 일반전기사업자와 체결한 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급계약에 따라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 보는 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전기공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일반전기사업자가 매각한 발전설비를 양수받은 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 보는 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기판매사업자로 보는 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전기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30호 전기사업법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동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인가·승인 기타 행정행위 또는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별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별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電源開發에 관한 特例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長期電力需給計劃”을 “전력수급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조 중 “電氣事業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一般電氣事業者 및 發電事業者”를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발전 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② 農漁村電化促進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韓國電力公社”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배전사업자”로 한다.

③ 濟州道開發特別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 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④ 基金管理基本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9. 전기사업법

⑤ 集團에너지事業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